

한-캐나다 FTA 협상

I. 연혁 및 현황

- 한-캐나다 FTA는 2005년 7월 협상 시작 이래 9년을 걸쳐 협상이 2014년 3월 11일 서울에서 통상장관 회담에서 타결.
- 한국이 진행한 FTA 협상 중 최장기간이 소요되고 수년간 협상이 중단도 된 등 우여곡절을 거쳐 온 이래 타결 전 상당한 진전 달성.
- 양국은 현재 FTA 협상 비준 전 법적 검토 중이며 양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2015년 중으로 목표로 두고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비준 전 가서명 후 공개를 하겠다는 방침.

II. 한-캐나다 주요 협상경과

- 2005. 7월 ~ 2008. 3월간 총 13차례 공식협상 개최
 - 캐나다의 쇠고기 관련 WTO 제소('09.4월)등으로 협상 중단
 - 2012년 이후 7차례 비공식회의를 통해 협상 재개 방안 협의
- 2013. 11월 제14차 공식협상 개최(11.25~29, 서울)
 - 총 24개 챕터 중 상품 시장접근 챕터를 제외한 23개 챕터 협상 타결
- 2013. 12월
 - 한·캐 통상장관회담시 한·캐 FTA 협상의 '실질적 진전' 확인
- 2014. 2월
 - 회기간회의를 통한 주요 잔여쟁점 처리방안 합의

Ⅲ. 기대효과

- 양국은 한-캐나다간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크다고 보는 만큼 한-캐나다 FTA가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캐나다는 NAFTA 이외에 주요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으며 캐나다와 FTA 협상 타결은 한국 정부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캐나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.
 - 캐나다는 한국의 제23대 수출대상국이자 제25대 수입 상대국
 - ※ 2013년 기준: 한-캐나다간 총교역액은 99억불 (수출 52억불, 수입 47억불)
- 상품 분야의 경우 양국 모두 협상 발효 후 10년 이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수준의 FTA 체결.
 - 한국 품목수 기준 97.5%, 수입액 기준 98.7%에 대해 10년 내 관세철폐
 - 캐나다 품목수 기준 97.5%, 수입액 기준 98.4%에 대해 10년 내 관세철폐
-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-캐나다 FTA 관련 세부적인 품목별 내용을 가서명 후 공개를 할 방침이라고 함.
 - ※ 가서명 시기는 미확정
-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농식품 20개 상위품목 중 관세양허를 공개했으며 관세철폐 기간은 즉시철폐 부터 5년 철폐단계로 되어있음.
 - 5년 철폐단계 경우 첫 해에는 5분에1 (1/5) 삭감되고 2번째 해에도 5분에1 (1/5) 삭감되는 간격으로 되어있음
 - 3년 철폐단계 경우 첫 해에는 3분에1 (1/3) 삭감되고 2번째 해에도 3분에1 (1/3) 삭감되는 간격으로 되어있음
-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철폐로 단기간 또는 장기간 한국 농식품의 캐나다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.
- 한국 농식품 중 가공이 캐나다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다음은 상품 품목을 농수산물수출자원정보 2월 2014년 통계에 따른 상위 캐나다 수출 품목별 관세철폐 기간을 정리했음.

- 한국은 한-캐나다 FTA가 한국 농식품 수출품에 관세철폐와 동시에 현지 마케팅 전략을 세워 또 새로운 기회를 확보해야 함.
- 가격 경쟁력도 기대를 할 수 있지만 한국 농식품 수출품에 부가가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도약을 하고 지속가능하게 성장해 나가는 전략을 기획 및 적용해야 FTA 효과를 더 볼 수 있음.

[참고 1]

한국 농식품 20개 상위 캐나다 수출 품목 중 기대※

※ 20개 상위 캐나다 수출 품목관련 관세철폐 양허는 가서명 전이라 추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품목 내에 상품이 다양한 형태로도 있어 각 관세율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품목과 관세율	관세철폐 단계
김 (10.5%)	5년 철폐
라면 (4%, 6%, 11%)	3년 또는 5년 철폐
음료(설탕, 감미료 첨가한 물, 인삼음료, 과즙음료 이외 기타) (11%)	3년 철폐
인스턴트면 면류(라면 이외 기타) (4%, 6%, 11%)	3년 또는 5년 철폐
비스킷, 쿠키 및 크레커 (3%, 11%)	즉시 철폐
아이스크림(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이외 기타) (6.5%, 9.5%)	6.5% 관세 경우 양허 제외 9.5% 관세 경우 5년 철폐
고추장 (8%, 9.5%)	5년 철폐
베이커리 제품(식빵, 건빵, 파이와 케이크, 비스킷, 쿠키, 크레커, 미과이외 기타) (3%, 11%)	즉시 철폐
소스, 소스 제조용 조제품(장류, 토마토 케첩, 겨자, 마요네스, 카레, 조미료, 메주 등 이외 기타) (8%, 9.5%)	5년 철폐
갈포섬유제의 벽지류(기타) (0%)	무관세
큰느타리버섯(신선,냉장) (not less than 8.5% per 1 kg/\$C8.43)	3년 철폐
배추(신선, 냉장) (not less than 12.5% per 1 kg/\$C1.35)	3년 철폐
국수(조제하지 않은 파스타/조란을 넣은것 이외 기타) (4%)	3년 철폐
팽이버섯(신선/냉장) (not less than 8.49% per 1 kg/\$C8.43)	3년 철폐
김치(냉동하지 않은 것) (8%)	3년 철폐

생선목(게맛의 것 이외 기타) (11%, 12%)	3년 철폐
프로필렌글리콜 (0%)	무관세
게(산것,신선,냉장/기타) (5%)	3년 철폐
고추류(파쇄 또는 분쇄한 것) (0%)	무관세
채소류 조제품(감자, 완두, 콩, 김치 등 이외 기타/식초, 초산 조제 이외 기타/냉 동하지 않은 것) (8%)	3년 철폐

※ 가서명 후 공개되는 최종 내용 참고필요

[참고 2]

(산업통상자원부) 한·캐나다 FTA 협상 타결 전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

1. 한·캐나다 FTA 협상 타결시 의의

- 한·캐나다 FTA는 2005.7월 협상 시작 이래 9년 가까이 협상이 계속되는 등 우리가 진행한 FTA 협상 중 최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수년간 협상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쳤으나 최근 상당한 진전을 달성
 - 3.11(화) 개최될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
- 우리와 캐나다간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큰 만큼, 한·캐나다 FTA가 타결될 경우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- NAFTA 이외에 주요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캐나다와 FTA협상을 타결할 경우, 특히 아시아 지역 국가로서 처음으로 캐나다와 FTA 협상을 타결하게 되며 우리 기업들의 캐나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- ※ 캐나다는 9개 FTA를 체결하였으나(파나마, 요르단, 콜롬비아, 페루, EFTA, 코스타리카, 칠레, 이스라엘, NAFTA) NAFTA 제외시 경제규모가 크지 않음
- ※ 일본, EU 등과는 장기간 협상 진행중이며 중국과는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음
- 캐나다는 G8 회원국이며 세계 11대 경제대국('12년 World Bank 기준)이나 우리나라와의 무역규모는 100억불 내외로 우리나라 제25위의 교역 상대국에 머물러 있는 바, 이는 캐나다의 대외무역이 미국, 멕시코 등 NAFTA 국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
 - ※ '13년 기준 한-캐나다간 총교역액은 99억불(수출 52억불, 수입 47억불)이며 캐나다는 우리의 제23대 수출대상국이자 제25대 수입 상대국
 - ※ '12년 기준 캐나다의 대NAFTA 국가 교역 비중: 65%
- 선진국이자 중요한 자원 대국인 캐나다와의 FTA를 통한 경제관계 긴밀화는 우리 경제의 업그레이드와 자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※ 캐나다는 석유 매장량 3위/생산량 6위, 천연가스 생산량 4위, 우라늄 생산량 3위 등의 자원부국임

□ 캐나다와의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14위 경제대국 중 9개국과 FTA를 갖게 됨으로써 전세계적인 FTA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목표달성에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※ '12년 GDP 규모(World Bank) : (1위) 미국 / (2위) 중국 / (3위) 일본 / (4위) 독일 / (5위) 프랑스 / (6위) 영국 / (7위) 브라질 / (8위) 러시아 / (9위) 이탈리아 / (10위) 인도 / (11위) 캐나다 / (12위) 호주 / (13위) 스페인 / (14위) 멕시코 / (15위) 한국

2. 한·캐나다 FTA 협상 주요내용

□ 한·캐나다 FTA는 상품, 원산지, 통관, 무역구제, 서비스, 투자, 통신, 금융, 전자상거래, 정부조달, 지적재산권, 경쟁, 노동, 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임

□ 상품 분야의 경우, 양국 모두 협정 발효후 10년 이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수준의 FTA 체결

※ (우리) 품목수 기준 97.5%, 수입액 기준 98.7%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
(캐나다) 품목수 기준 97.5%, 수입액 기준 98.4%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

○ (자동차) 전체 캐나다 수출의 40%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3년, 실질적으로 24개월만에 철폐하기로 한 바, 현재 캐나다와 FTA 협상중인 일본, EU에 비해 유리한 경쟁력 확보

※ '13년 우리의 대캐나다 자동차 수출은 22.3억불(수출비중 42.8%)

- 한·미 FTA와 비교시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을뿐만 아니라 관세철폐기간 측면에서도 미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캐나다 자동차 시장을 개방

※ 캐나다: 6.1% 관세를 실질적으로 24개월만에 철폐

※ 미국: 2.5% 관세를 유지하다 협정 발효후 5년(2016년) 일괄 철폐

- 자동차 관세가 24개월만에 철폐될 경우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미국, 멕시코 업체와 동등한 경쟁 여건 확보 가능

- 캐나다는 우리의 5대 자동차 수출시장으로 수출은 증가세를 시현중인바, 한·캐 FTA 체결로 대캐나다 직접 수출 확대 기대

※ 한국의 자동차 수출 순위 : 1위 미국(75.7만대), 2위 사우디(19.6만대), 3위 러시아(14.3만대), 4위 호주(13.6만대), 5위 캐나다(13.3만대)

- 현재 캐나다 시장내 한국차 시장점유율은 12%이나 FTA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※ '13년 캐나다 자동차 시장점유율 : 미국(44.5%), 일본(33.6%), 한국(12.0%)

- 자동차 비관세 분야에서는 상대국 원산지 차량이 자국 안전기준에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을 충족한 경우 각각 자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기로 합의하였음

- 완성차 원산지와 관련, 미국산 부품에 대한 상호 누적을 인정기로 함

○ (자동차 부품)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, 타이어에 대한 관세철폐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완성차 업체로의 수출 확대 기대

※ 주요 자동차부품(관세율 6%, 즉시/3년철폐), 타이어(관세율 7%, 5년철폐)

○ (섬유) 섬유 분야의 높은 관세(평균 5.9%, 최대 18%)도 대부분 3년 내 철폐로 한·미 FTA 대비 높은 수준이며, 원산지도 한·미 FTA의 원사기준(yarn-forward)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하여, 향후 우리 중소기업의 대캐나다 수출 확대가 기대됨

○ (기계·전자) 냉장고,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섬유·화학기계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확대 기대

※ 캐나다측 관세 및 양허: 냉장고(6%, 3년철폐), 세탁기(8%, 즉시철폐), 섬유·화학기계(6.5%/8%, 즉시~5년철폐)

※ 그 외 우리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인 무선전화기, 반도체, 철강, 석유제품 등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

○ (농축산물) 전반적으로 한·미/한·EU FTA보다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였으며, 육류 원산지에 대해서는 한·미 FTA와 동일(닭고기를 제외한 육류에 대한 도축 기준 인정)하게 합의

※ 전체 농산물 중 18.8%(품목수 282개)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관세철폐 등으로 예외취급하여 한미(12.3%)/한U(14.7%) 대비 보수적으로 합의

- 쌀·과실류 등 211품목 양허제외, 쇠고기(15년), 돼지고기(5년/13년) 등 20개 품목 농산물 셰이프가드(ASG) 설정

□ 상품 시장 개방 이외에도 서비스·투자 시장개방 확대 및 규범 측면에서 WTO 플러스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제도 선진화 달성 가능

○ (서비스·투자) 캐나다는 NAFTA 발효시점('94.1.1)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우리측에 자동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우리측은 한·캐나다 FTA 발효시점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캐측에 자동 부여

○ (정부조달) 개정 GPA 대비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양허 하한선을 인하함으로써 FTA를 통한 조달시장 추가 개방

※ 개정 GPA에서 양국은 13만 SDR 이상의 중앙정부기관 상품, 서비스 조달시장을 개방하였으나 한-캐 FTA에서는 7만 SDR을 기준으로 양국 화폐로 환산하여 개방(우리 1억원, 캐나다 10만 캐불)

○ (지리적 표시) 우리측은 캐측 관심품목 2개(캐나다 위스키, 캐나다 라이 위스키)를, 캐측은 우리측 관심품목 4개(고려홍삼, 고려백삼, 고려 수삼, 이천쌀)를 지리적 표시로 보호기로 합의

3. 농업분야에 대한 대책방향

□ 정부는 한·캐나다 FTA가 타결될 경우 산업부, 기재부,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피해 분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내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임

○ 협상 타결 이후, 정부는 협상 결과를 반영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,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 타결 등으로 인한 축산 분야 피해 보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

한·캐나다 FTA 협상타결 상품 양허

□ 양측은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, 높은 수준의 상품자유화 달성

- (캐나다) 품목수 93.2%, 수입액 95.9%에 대해 3년내 관세철폐, 품목수 97.5%, 수입액 98.7%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
- (한국) 품목수 86.1%, 수입액 92.3%에 대해 3년내 관세철폐, 품목수 97.5%, 수입액 98.4%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

□ (캐나다 시장개방) 對캐나다 최대 수출품목('13년 수출 22.3억불, 수출비중 42.8%)인 승용차 관세(6.1%)를 3년(24개월) 철폐기로 한 바, 현재 캐나다와 FTA 협상중인 일본, EU 업체에 비해 유리한 경쟁력 확보

-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(6%)에 대해 즉시/3년철폐, 타이어(7%) 5년철폐, 냉장고·세탁기(6~8%) 등 가전은 즉시/3년철폐 등으로 합의 하여 수출확대 기대
- 섬유 분야(평균관세율 5.9%, 최고 18%)는 대부분 3년내 철폐로 한-미 FTA 대비 높은 수준으로 합의하였으며, 원산지도 한·미 FTA(원사기준)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하여 중소기업 수출 확대 기대

※ 그 외 우리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인 무선전화기, 반도체, 철강, 석유제품 등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

□ (한국 시장개방) 전체 농산물 중 18.8%(품목수 282개)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하여 한·미(12.3%)/ 한·EU (14.7%) FTA에 비해 보수적으로 합의

- 쌀, 분유, 치즈, 감귤, 인삼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하고, 꿀, 대두, 맥아,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(TRQ) 부여
- 쇠고기(관세율 40%)는 15년철폐, 돼지고기(22.5~25%)는 5년/13년철폐하되, 농산물세이프가드(ASG) 설정

※ 유연탄, 펄프, 원목, 동광 등 한국의 대캐나다 수입액의 67.6%(09-11년 평균 기준) 내외는 이미 무관세를 적용